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

[시행 2025. 3. 1.] [산업통상자원부령 제600호, 2025. 2. 28., 일부개정]

특허청 (혁신행정담당관실) 042-481-5054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·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,「정부조직법」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「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장 특허청

제2조(차장)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,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. <개정 2014. 1. 2.>

제3조(대변인) 대변인은 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. <개정 2013. 12. 12., 2018. 3. 30., 2023. 8. 30.>

제3조의2 삭제 <2022. 7. 13.>

제3조의3 삭제 <2022. 7. 13.>

제3조의4 삭제 <2022. 5. 10.>

제4조(감사담당관)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. <개정 2023. 8. 30.>

제5조(심사품질담당관) 심사품질담당관은 부이사관・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. <개정 2023. 8. 30.>

- **제6조(기획조정관)**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,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.
 -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, 혁신행정담당관,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두되,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.<개정 2017. 8. 8., 2023. 8. 30.>
 -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.
 - 1.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 · 총괄 및 조정
 - 2. 주요업무계획지침의 수립・총괄 및 조정
 - 3. 연두업무계획의 수립
 - 4. 주요 정책의제의 총괄ㆍ조정 및 관리
 - 5. 대통령 공약 및 지시사항에 관한 업무
 - 6. 재정계획의 수립·총괄 및 조정
 - 7. 재정사업 자율평가에 관한 업무
 - 8. 예산의 편성 운영 및 결산
 - 9.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
 - 10. 그 밖에 기획조정관 소관 분장업무 중 다른 담당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
 - ④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.<개정 2017, 8, 8,, 2017, 12, 29,, 2018, 3, 30.>
 - 1. 행정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- 2.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
- 3. 책임운영기관 사업운영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
- 4. 책임운영기관의 평가 및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업무
- 5.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 선정, 추진상황 확인 점검 및 관리
- 6. 조직문화의 개선에 관한 사항
- 7.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・추진 및 관리
- 8. 자체제안제도의 총괄 운영
- 9. 사무분장규정 및 위임전결규정의 관리
- 10. 행정능률 관리
- 11. 업무처리절차의 분석과 업무처리과정의 표준화
- 12. 청 내 정부위원회 관련 업무의 총괄
- 13.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총괄
- 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.
- 1. 산업재산권 관련 규제개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
- 2. 산업재산권 관련 규제개혁사항 발굴 및 규제완화에 관한 사항
- 3. 법령안의 입안 지원
- 4. 행정심판업무의 총괄
- 5. 소송사무의 총괄
- 6. 법령질의에 대한 회신의 총괄
- 7. 자체 규제심사에 관한 업무
- 8. 여성정책 관련 업무의 총괄
- 9. 입법예고를 위한 전자공청회의 운영
- 10. 산업재산권 관련 운영협의회의 운영
- 11. 비영리 법인 관련 업무의 총괄
- 12. 산하 공공기관 관리 업무의 총괄
- 13. 삭제 < 2017. 12. 29.>
- 14.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
- 15. 성과관리업무의 총괄 조정 및 지원
- 16. 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
- 17. 성과관리지표의 개발 및 관리
- 18. 직무성과계약제 운영 및 평가
- 19. 부서 및 개인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
- 20. 특허청 마일리지 제도 운영

제7조(운영지원과)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. <개정 2023. 8. 30.>

- **제8조(산업재산정책국)** ① 산업재산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,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.
 - ② 산업재산정책국에 산업재산정책과, 산업재산활용과, 산업재산인력과, 지역산업재산과, 산업재산창출전략팀 및 아이디어경제혁신팀을 두며, 각 과장은 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, 각 팀장은 과학기술서 기관·서기관·공업사무관·농업사무관·임업사무관·수의사무관·해양수산사무관·기상사무관·보건사무관·의료기술사무관·의무사무관·약무사무관·환경사무관·항공사무관·시설사무관·전산사무관·방송통신사무관
 - 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.<개정 2015. 1. 6., 2019. 11. 1., 2022. 7. 13., 2023. 8. 30.>
 - ③ 산업재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개정 2015. 1. 6., 2015. 12. 30., 2019. 3. 26., 2019. 11. 1., 2020. 12. 29., 2022. 3. 4.>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

- 1. 산업재산권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
- 2. 산업재산권제도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
- 3. 산업재산권 창출 활용의 촉진을 위한 기본시책의 수립
- 4. 국내외 산업재산권 정책동향 조사 및 산업재산권 연구기반의 조성
- 5. 삭제 < 2015. 1. 6.>
- 6. 한국발명진흥회 및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등 산하단체에 대한 지도・감독
- 7.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 사용의 촉진을 위한 지원정책의 수립ㆍ추진
- 8. 삭제 < 2019. 11. 1.>
- 9. 삭제 < 2019. 11. 1.>
- 10. 삭제 < 2022. 3. 4.>
- 11. 특허권의 수용 및 강제실시에 관한 사항
- 12.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 추진
- 13. 그 밖에 국내 다른 과 및 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
- ④ 산업재산활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개정 2015. 1. 6., 2016. 5. 17., 2019. 11. 1., 2020. 3. 31., 2020. 12.
- 29., 2022. 3. 4., 2022. 12. 23.>
- 1. 삭제 < 2022. 12. 23.>
- 2. 삭제 < 2022. 12. 23.>
- 3. 삭제 < 2022. 12. 23.>
- 4. 산업재산권 관련 금융의 활성화
- 4의2.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·활용 사업의 관리·운영
- 4의3. 산업재산권 금융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
- 4의4. 발명 등의 평가 관련 제도의 수립・운영
- 4의5.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신뢰성 제고 추진
- 5. 중소기업투자 모태조합 특허계정의 관리
- 5의2. 산업재산권 투자활성화 정책의 수립
- 6.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
- 7. 삭제 < 2022. 3. 4.>
- 8. 특허공제사업의 관리 운영
- 9. 그 밖에 산업재산권의 활용에 관한 사항
- 10. 삭제 < 2015. 1. 6.>
- 11. 삭제 < 2015. 1. 6.>
- 12. 삭제 < 2015. 1. 6.>
- ⑤ 산업재산인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개정 2019. 11. 1., 2022. 3. 4.>
- 1. 산업재산인력 양성 및 활용시책의 수립ㆍ시행
- 2. 산업재산인력 양성 관련 국내외 제도 및 정책의 조사 연구
- 3. 산업재산인력에 관한 수급실태 및 통계의 조사 분석
- 4. 산업계・학계 및 연구계 인력에 대한 산업재산권 관련 교육
- 5. 변리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
- 6. 변리사의 등록 및 자격관리와 변리사 시험계획의 수립ㆍ시행
- 7. 대한변리사회에 대한 지도 감독
- 8. 변리사자격 · 징계위원회의 운영
- 9. 발명교육 진흥 및 확산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
- 10. 발명영재의 발굴 육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 시행

- 11. 발명교육프로그램의 연구 개발 및 활용 보급
- 12. 학생발명교육사업에 대한 한국발명진흥회 등 유관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
- 13. 삭제 < 2022. 12. 23.>
- ⑥ 지역산업재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개정 2019, 11, 1,>
- 1. 지역의 산업재산권 창출・활용을 위한 기반조성
- 2. 지방자치단체와의 산업재산권 관련 업무협력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
- 3. 기업체의 산업재산경영 지원시책의 수립ㆍ시행
- 4. 기업체의 산업재산경영 실태의 조사・분석 및 통계 관리
- 5. 기업체의 산업재산경영 활성화를 위한 유관단체 및 세계지식재산권기구(WIPO)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
- 6. 외국의 산업재산경영 지원제도 및 운영실태 조사 분석
- 6의2. 발명에 대한 인식제고 및 발명장려를 위한 행사 개최
- 6의3. 삭제 < 2022. 12. 23.>
- 6의4. 발명인의 전당 운영
- 7. 그 밖에 산업재산경영 활성화 및 지역의 산업재산권 지원에 관한 사항
- ⑦ 산업재산창출전략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신설 2015. 1. 6., 2016. 5. 17., 2020. 12. 29., 2022. 12. 23., 2024. 6. 13.>
- 1. 산업재산 정보 활용을 통한 산업재산권 창출 기본계획의 수립 추진
- 2. 산업재산 정보 분석에 기반한 정부 연구개발사업 지원시책의 수립ㆍ시행
- 3. 산·학·연의 연구개발 과정에서 특허전략 수립을 위한 지원 시책의 수립·시행
- 4. 표준특허 창출・활용에 관한 지원정책의 수립・추진
- 5. 표준특허 전문 인력 양성 및 통계 정보서비스 제공 등 표준특허 창출기반 조성
- 6. 「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배치설계권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
- 7.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의 기술향상 및 권리화를 위한 지원시책의 수립・추진
- 8. 삭제 < 2022. 3. 4.>
- 9. 삭제 < 2019. 11. 1.>
- 10. 삭제 < 2015. 12. 30.>
- 11.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 대한 지도 감독
- 12. 정부 연구개발사업 특허성과의 조사・분석 및 진단에 관한 사항
- 13. 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
- 14. 산업재산 정보와 관련된 대용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(이하 "산업재산 빅데이터"라 한다)의 분석·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·시행
- 15. 산업재산 빅데이터의 분석 활용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홍보
- 16. 그 밖에 산업재산권 창출전략 및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사항
- ⑧ 아이디어경제혁신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신설 2022. 7. 13., 2022. 12. 23.>
- 1. 아이디어 경제 활성화 및 특허기술 거래 사업화 정책의 수립 시행
- 2. 아이디어 및 특허기술 거래의 촉진
- 3. 특허기술 사업화의 촉진
- 4. 대학・공공연구기관의 산업재산권 관리역량 강화 및 기술이전・사업화 지원
- 5. 국유특허권의 처분・관리 및 활용 촉진
- 6. 여성발명활동의 진흥
- 7. 우수 발명품 및 우수특허제품의 판로개척 지원
- 8. 아이디어 창출・활용・보호 및 특허기술 거래・사업화 촉진을 위한 제도 연구
- 9. 아이디어 및 특허기술 거래 사업화에 대한 인식제고, 홍보, 민관협력 등 진흥기반 조성

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

- 10. 그 밖에 아이디어 경제 활성화 및 특허기술 거래 ㆍ 사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
- **제9조(산업재산보호협력국)** ①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,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.
 - ② 산업재산보호협력국에 산업재산보호정책과, 산업재산분쟁대응과,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, 상표특별사법경찰과, 국제협력과 및 부정경쟁조사팀을 두되, 각 과장은 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, 부정경 쟁조사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공업사무관·농업사무관·임업사무관·수의사무관·해양수산사무관·기상사무관·보건사무관·의료기술사무관·의무사무관·약무사무관·환경사무관·항공사무관·시설사무관·전산사무관·방송통신사무관·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.<개정 2015. 1. 6., 2019. 11. 1., 2021. 7. 27., 2023. 8. 30., 2025. 2. 28.>
 - ③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개정 2021. 7. 27., 2022. 12. 23., 2024. 6. 13.>
 - 1. 산업재산권 보호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
 - 2. 「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의 방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의 보호와 관련된 정책의 수립·총괄·조정
 - 3. 산업재산권 보호 관련 법령 제도의 운영
 - 4.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법령 ㆍ 제도의 운영
 - 5.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기본계획 · 시행계획 수립 · 시행
 - 5의2. 산업재산권 보호,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산업재산 정보의 분석 및 이용·제공에 관한 사항 5의3. 청 소관 방첩업무 및 방첩 유관기관과의 협력 업무
 - 6. 산업재산권 보호,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교육・홍보
 - 7. 산업재산권 보호,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국내외 실태 조사・분석 및 제도 조사・연구
 - 8. 산업재산권 보호,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
 - 9.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대한 지도ㆍ감독
 - 9의2.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
 - 9의3.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운영
 - 10. 그 밖에 국내 다른 과 및 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
 - ④ 산업재산분쟁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개정 2021. 7. 27.>
 - 1. 산업재산권 및 영업비밀 분쟁에 관한 시책 수립ㆍ시행
 - 2. 산업재산권 및 영업비밀 분쟁의 예방 대응 지원
 - 3. 산업재산권 및 영업비밀 분쟁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・운영
 - 4. 영업비밀 보호 지원에 관한 시책 수립 시행
 - 5.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 운영
 - 6. 해외 산업재산권 보호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
 - 7. 해외 산업재산권 보호 관련 교육 홍보
 - 8. 삭제 < 2022. 12. 23.>
 - 9. 삭제 < 2024. 6. 13.>
 - 10. 해외지식재산센터의 운영
 - 11. 그 밖에 산업재산권 및 영업비밀 분쟁의 예방ㆍ대응에 관한 사항
 - ⑤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신설 2021. 7. 27., 2024. 6. 13.>
 - 1. 「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」제6조제35호의2에 규정된 범죄(이하 "기술디자 인침해범죄"라 한다) 관련 수사계획의 수립·시행
 - 2. 기술디자인침해범죄에 대한 수사
 - 3. 기술디자인침해범죄 수사 관련 국내 · 외 정보의 수집 · 분석 및 관리

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

- 4. 기술디자인침해범죄 수사사건 상담・접수 및 통계 분석・관리
- 5. 기술디자인침해범죄 수사 관련 법령ㆍ제도 운영
- 6. 기술디자인침해범죄 수사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
- 7. 전자적 증거의 수집 및 분석
- 8. 수사 관련 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
- 8의2. 기술디자인침해 단속 지원사업 운영
- 9. 기술디자인침해범죄 예방 및 계도를 위한 교육 홍보
- 10. 그 밖에 기술디자인침해범죄 수사에 관한 사항
- ⑥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개정 2021. 7. 27.>
- 1. 「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」제6조제35호에 규정된 범죄(이하 "상표침해범죄"라 한다) 관련 수사계획의 수립·시행
- 2. 상표침해범죄에 대한 수사
- 3. 상표침해범죄 수사 관련 국내・외 정보의 수집・분석 및 관리
- 4. 상표침해범죄 수사사건 상담・접수 및 통계 분석・관리
- 5. 상표침해범죄 수사 관련 법령ㆍ제도 운영
- 6. 상표침해범죄 수사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
- 7. 온라인 위조상품에 대한 감시 및 시정조치 등에 관한 사항
- 8. 위조상품 유통방지를 위한 민관협의체 운영 및 협력
- 9. 위조상품 단속 지원사업 운영 및 위조상품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
- 10. 상표침해범죄 예방 및 계도를 위한 교육 홍보
- 11. 그 밖에 상표침해범죄 수사에 관한 사항
- ⑦ 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개정 2025. 2. 28.>
- 1. 산업재산권,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국제협력(외국 정부·기관, 국제기구 등과의 다자 및 양자, 통상등 협력을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 총괄
- 2. 산업재산권,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추진
- 3. 산업재산권,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남북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
- 4. 국가 간 특허심사결과의 상호 활용·협력에 관한 사항
- 5. 산업재산권,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국제조약 및 협정에 관한 사항
- 6. 산업재산권,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하는 통상협상 및 이를 위한 조사·연구에 관한 사항
- 7. 세계지식재산기구 한국신탁기금에 관한 사항
- 8. 산업재산권,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행정 서비스의 해외 수출
- 9. 산업재산권,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과의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
- 10. 산업재산권,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인력의 국제기구 진출 및 외국 정부・기관 관련 업무의 총괄
- 11. 산업재산권,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분야 해외 주재관・파견관 관리 및 활동 지원
- 12. 공무 국외출장 관리 및 지원
- 13. 산업재산권,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국제동향 정보의 수집 및 관리
- 14. 산업재산권,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해외 홍보, 민원대응 및 고객 지원
- 15. 그 밖에 산업재산권,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
- ⑧ 삭제<2025. 2. 28.>
- ⑨ 부정경쟁조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신설 2021. 7. 27.>
- 1. 「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(이하 "부정경쟁행위"라 한다) 관련 조사계획의 수립·시행

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

- 2.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시정권고 등 행정조치에 관한 사항
- 3. 부정경쟁행위 조사사건 상담 · 접수 및 통계 분석 · 관리
- 4. 부정경쟁행위 조사 관련 법령・제도 운영
- 5. 유관기관 간 공동 행정조사 및 기술판단지원에 관한 사항
- 6. 부정경쟁방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교육 지원 등 유관기관 협력
- 7. 부정경쟁방지를 위한 제도・판례 및 조사 실무・사례 등 연구
- 8. 부정경쟁행위 예방 계도를 위한 교육 홍보
- 9. 산업재산권 표시와 관련된 제도 운영 및 지도 등에 관한 사항
- 10. 그 밖에 부정경쟁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
- 제10조(산업재산정보국) ① 산업재산정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,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. <개정 2023. 4. 11.>
 - ② 산업재산정보국에 산업재산정보정책과, 산업재산정보시스템과, 산업재산데이터관리과, 산업재산출원과, 산업재산등록과 및 산업재산국제출원과를 두되, 각 과장은 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.<개정 2015. 12. 30., 2023. 4. 11., 2023. 8. 30.>
 - ③ 산업재산정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개정 2024. 6. 13.>
 - 1. 산업재산 정보화 정책의 수립・총괄 및 조정
 - 2. 산업재산 정보화 관련 법령 제도의 운영 및 연구 개선
 - 3.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· 시행계획의 수립 · 시행
 - 4. 산업재산 정보 수요 및 활용 실태 조사 분석
 - 5. 산업재산 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의 구성 운영
 - 6. 산업재산 분류정보와 다른 분야 분류정보의 연계에 관한 사항
 - 7. 산업재산 정보화 기술의 개발・연구・분석・평가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
 - 8. 산업재산과 관련된 통계의 기획・조사・작성・분석・보급・활용에 관한 총괄 및 통계시스템의 구축・운영
 - 9. 지식재산통계연보 등 특허청 연보의 발간 배포
 - 10. 산업재산 정보의 분석・활용 시스템 구축・운영 및 인프라 구축
 - 11. 산업재산 정보의 수집ㆍ가공 및 제공
 - 12.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ㆍ제공에 따른 보안지침의 제정 및 관리
 - 13. 산업재산 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
 - 14. 산업재산 정보화 관련 교육 및 홍보
 - 15. 산업재산 고객서비스에 관한 정책의 수립・종합 및 조정
 - 16. 산업재산 수수료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
 - 17. 산업재산 관련 민원(국민제안을 포함한다) 제도의 총괄・운영
 - 18. 「청원법」에 따른 청 소관 청원제도의 운영 및 관리
 - 19. 산업재산 정보화에 관한 국제협력 계획의 수립 조정 및 그 밖에 산업재산 정보화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
 - 20. 산업재산 정보화 국제연계시스템의 연구 · 개발 및 운영
 - 21. 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의 해외 확산에 관한 사항
 - 22. 산업재산 정보의 국가 간 교환계획의 수립ㆍ조정
 - 23. 산업재산 정보화 관련 국제표준 등의 동향 조사 및 대책 수립ㆍ추진
 - 24.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
 - 25.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·추진 및 데이터 관리·개방 등 총괄
 - 26. 한국특허정보원에 대한 지도 감독
 - 27.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

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

- ④ 산업재산정보시스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개정 2015. 12. 30., 2019. 11. 1., 2021. 7. 27., 2023. 4. 11., 2024. 6. 13.>
- 1. 산업재산 정보 시스템 개발・운영 계획의 수립・조정
- 2. 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의 개발・연구・유지 및 관리
- 3. 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의 개발 운영과 관련된 외주용역 관리
- 4. 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의 개발과 관련된 시스템의 설계를 위한 기술조사・분석 및 평가
- 5. 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의 개발과 관련된 기반기술 및 규격의 검토
- 6. 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교육 및 지원
- 7. 업무절차의 재설계에 따른 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의 개발과 관련된 제도의 정비
- 8. 산업재산 정보화를 위한 데이터 통신망의 구축 유지 및 관리
- 9. 전산장비시설 등 전산자원의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
- 10. 전산장비시설 등 전산자원의 구매・운영・유지 및 관리
- 11. 전산장비시설 등 전산자원의 운영과 관련된 외주용역의 관리
- 12. 전산장비시설 등 전산자원의 사용에 관한 지원
- 13. 전산장비시설 등 전산자원 운영에 관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의 업무협의 및 조정
- 14. 상용 소프트웨어의 설치・운영・유지 및 관리
- 15. 특허청 홈페이지 및 지식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
- 16. 산업재산의 출원・등록・심판 및 그 밖의 절차에서 제출 또는 생성된 문서의 전자화 및 문서전자화기관의 운영
- 17. 산업재산 정보 보안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
- 18. 산업재산 관련 개인정보보호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
- 19. 그 밖에 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의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
- ⑤ 산업재산데이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개정 2015. 1. 6., 2015. 12. 30., 2021. 7. 27., 2023. 4. 11., 2024. 6. 13.>
- 1.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 보급에 관한 계획의 수립 조정
- 2.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
- 3.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품질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 운영 및 관리
- 4.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・관리
- 5. 삭제 < 2019. 11. 1.>
- 6. 산업재산 공보의 생성・발간 및 배포
- 7.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매 및 교환
- 8. 특허영문초록의 생성·발간 및 배포
- 9. 산업재산에 관한 국내외 자료의 수집・분류・보관 및 보급
- 10. 문서의 편찬 보존 및 관리와 특허청 소관 기록관의 운영 관리
- 11. 행정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항
- 12. 산업재산 검색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
- 12의2. 산업재산 정보 서비스의 개발 및 상용화 촉진
- 12의3.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기술,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연구ㆍ개발 지원
- 13. 그 밖에 산업재산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
- ⑥ 삭제 < 2015. 12. 30.>
- ⑦ 산업재산출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개정 2023. 4. 11., 2024. 6. 13.>
- 1. 산업재산 출원에 대한 방식심사 처리계획의 수립
- 2. 산업재산 출원 관련 제도의 운영
- 3. 산업재산 국내 출원서류 및 중간서류의 방식심사

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

- 4. 출원에 관한 보정 및 반려
- 5. 출원의 취하에 관한 사항
- 6. 심사청구기간 만료예고의 통지
- 7. 출원에 관한 공시송달
- 8. 출원 관련 서류의 보관 및 열람제공
- 9.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서의 방식심사
- 10. 상표등록이의신청서의 방식심사
- 11. 산업재산에 관한 민원상담 및 안내
- 12. 산업재산 출원서류 등록서류 및 중간서류의 접수
- 13. 산업재산 출원・등록에 관한 각종 증명서와 등・초본의 발급
- 14. 그 밖의 출원에 관한 사항
- ⑧ 산업재산등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개정 2021. 7. 27., 2023. 4. 11.>
- 1. 산업재산권 등록에 대한 방식심사 처리계획의 수립
- 2. 산업재산권 등록 관련 제도의 운영
- 3. 산업재산권의 등록에 관한 법령의 운영
- 4. 등록에 관한 서류의 발송 및 보존
- 5. 등록신청서의 방식심사
- 6.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서의 방식심사
- 7. 권리의 설정ㆍ이전ㆍ변경 및 소멸 등록
- 8. 권리자의 등록명의인 표시변경
- 9. 특허증 및 등록증의 발급
- 10. 각종 등록원부의 비치 보관
- 11. 등록에 관한 공시송달
- 12. 각종 등록원부의 열람
- 13. 이의신청, 심판 및 재심청구, 특허법원에의 제소 및 상고의 예고등록과 확정등록
- 14. 촉탁에 의한 등록
- 15. 특허고객상담센터의 운영 및 관리
- 16.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민신문고의 운영 및 관리
- 17. 그 밖의 등록에 관한 사항
- ⑨ 산업재산국제출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개정 2015. 5. 26., 2022. 12. 23., 2023. 4. 11., 2024. 6. 13.>
- 1. 산업재산 국제출원에 대한 방식심사 처리계획의 수립
- 2. 산업재산 국제출원 관련 제도의 운영
- 3.「특허협력조약」에 따른 국제특허 출원서류의 방식심사
- 4. 국제출원일, 출원번호의 부여 및 통지
- 5. 우선권증명서류 등 중간서류의 방식심사
- 6. 삭제 < 2015. 1. 6.>
- 7. 지정관청에 의한 국내진입 국제출원서류의 방식심사
- 8. 「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」에 따른 국제상표 출원서류의 방식심사
- 9. 「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」에 따른 의견서 등 중간서류 및 국제상표등록이의신청서 의 방식심사
- 9의2.「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」에 따른 국제디자인 출원서류의 방식심사
- 9의3.「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」에 따른 의견서 등 중간서류 및 국제디자인등록 이의신청서의 방식심사

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

10. 국제출원 관련 국제사무국과의 업무협력

10의2. 삭제 < 2022. 12. 23.>

10의3. 삭제 < 2022. 12. 23.>

11. 그 밖의 국제출원에 관한 사항

[제목개정 2023. 4. 11.]

제11조(상표디자인심사국) ①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,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.

② 상표디자인심사국에 상표심사정책과, 디자인심사정책과, 생활용품상표심사과, 화학식품상표심사과, 전문서비스 상표심사과, 일반서비스상표심사팀, 기계전자상표심사팀, 국제상표심사팀, 생활디자인심사과 및 산업디자인심사팀 을 두되,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, 각 팀장은 서기관・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.

<개정 2016. 8. 26., 2019. 11. 1., 2025. 2. 28.>

- ③ 상표심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- 1.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처리계획의 수립
- 2. 「상표법」, 상표심사기준 및 상표제도의 운영・연구
- 3. 국제상표심사기준 및 국제상표제도의 운영 연구
- 4.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 관리 체계의 구축・운영
- 5.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의 분석 및 통계관리
- 6.「상표법」제10조에 따른 상품류 구분에 대한 기준 및 제도의 운영・연구
- 7. 상표등록출원・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류
- 8. 상표등록출원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자료의 관리
- 9. 상표의 조사 분석 등 심사 지원에 관한 사항
- 10. 그 밖에 국내 다른 과 및 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
- ④ 디자인심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개정 2015. 5. 26., 2019. 11. 1.>
- 1.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처리계획의 수립
- 2.「디자인보호법」, 디자인심사기준 및 디자인제도의 운영・연구
- 2호의2. 국제디자인심사기준 및 국제디자인제도의 운영 연구
- 3.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심사 관리 체계의 구축・운영
- 4.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의 분석 및 통계관리
- 5. 디자인분류 기준 및 제도의 운영・연구
- 6. 삭제 < 2015. 5. 26.>
- 7. 디자인등록출원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분류

7의2. 디자인등록출원・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자료 및 공지디자인 관리

7의3. 국제디자인에 관한 심사

- 8. 디자인의 조사 분석 등 심사 지원에 관한 사항
- 9. 그 밖에 디자인의 심사에 관한 업무 중 생활디자인심사과 및 산업디자인심사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
- ⑤ 생활용품상표심사과장은 의류 등 생활용품 분야의 상표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.<개정 2019. 11. 1.>
- ⑥ 화학식품상표심사과장은 화장품 등 화학 및 식품 분야의 상표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 사 사무를 분장한다.<신설 2019. 11. 1.>
- ⑦ 전문서비스상표심사과장은 금융, 의료, 법무, 연구, 통신 등과 관련된 전문서비스업 분야의 상표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.<개정 2019. 11. 1., 2025. 2. 28.>
- ⑧ 일반서비스상표심사팀장은 도·소매업, 식음료업, 숙박업 등과 관련된 일반서비스업 분야의 상표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.<신설 2025. 2. 28.>

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

- ⑨ 기계전자상표심사팀장은 전기전자상품 등 기계 및 전자 분야의 상표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.<개정 2019. 11. 1., 2025. 2. 28.>
- ⑩ 국제상표심사팀장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.<신설 2019. 11. 1., 2025. 2. 28.>
- ① 생활디자인심사과장은 생활용품 분야의 디자인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.<신설 2019. 11. 1., 2025. 2. 28.>
- ② 산업디자인심사팀장은 산업용품 분야의 디자인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.<신설 2019. 11. 1., 2025. 2. 28.>
- 제12조(특허심사기획국) ① 특허심사기획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,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.
 - ② 특허심사기획국에 특허심사총괄과, 특허제도과, 생활용품심사과, 식품생물자원심사과, 주거기반심사과, 가전제품심사과 및 국제특허출원심사팀을 두며, 특허심사총괄과장, 특허제도과장, 생활용품심사과장, 식품생물자원심사과장, 주거기반심사과장 및 가전제품심사과장은 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, 국제특허출원심사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공업사무관·농업사무관·임업사무관·수의사무관·해양수산사무관·기상사무관·보건사무관·의료기술사무관·의무사무관·약무사무관·환경사무관·항공사무관·시설사무관·전산사무관·방송통신사무관·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.<개정 2019. 11. 1., 2022. 3. 4., 2022. 5. 10., 2022. 12. 23., 2023. 8. 30., 2025. 2. 28.>
 - ③ 특허심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개정 2015. 1. 6,, 2019. 11. 1,, 2022. 3. 4,, 2023. 4. 11.>
 - 1. 특허출원·실용신안등록출원 및「특허협력조약」에 따른 국제출원(이하 이 조에서 "국제출원"이라 한다)에 대한 심사처리계획의 수립·조정
 - 2. 특허출원・실용신안등록출원 및 국제출원에 대한 심사 관리 체계의 구축・운영
 - 3. 특허출원・실용신안등록출원 및 국제출원의 심사처리에 관한 분석
 - 4. 특허출원·실용신안등록출원 및 국제출원에 대한 선행기술조사 사무 및 각 기술분야별 기술동향조사 사무의 총 괄
 - 5. 특허출원・실용신안등록출원 및 국제출원에 대한 분류
 - 6. 국제특허분류제도의 운영 연구
 - 7. 삭제 < 2015. 12. 30.>
 - 8. 특허심사기획국・디지털융합심사국・전기통신심사국・화학생명심사국・기계금속심사국 및 반도체심사추진단에 공동으로 관련되어 주무 부서를 결정하기가 곤란한 분야의 특허출원・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심사
 - ④ 특허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개정 2022. 3. 4.>
 - 1. 특허출원・실용신안등록출원 및 국제출원과 그 심사에 관련된 법령・제도의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사항
 - 2. 특허출원・실용신안등록출원 및 국제출원 심사기준의 총괄・조정과 심사지침서・업무편람의 발간
 - 3.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심사제도의 운영
 - 4. 특허기술상 운영에 관한 사항
 - 5. 그 밖에 특허출원・실용신안등록출원 및 국제출원 제도에 관한 사항
 - ⑤ 생활용품심사과장은 생활가구, 생활잡화, 스포츠레저 및 생활뷰티용품 분야의 특허출원·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.<개정 2019, 11, 1,, 2023, 6, 28.>
 - ⑥ 식품생물자원심사과장은 식품제조, 식품보존, 생물자원, 식물자원 및 동물자원 분야의 특허출원·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.<개정 2019. 11. 1.>
 - ⑦ 주거기반심사과장은 주거환경, 주거구조, 주거건축, 주거생활 및 주거안전 분야의 특허출원·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.<개정 2019. 11. 1.>
 - ® 가전제품심사과장은 냉동냉장기기, 세탁건조기기, 카메라표시장치 및 발광다이오드(LED) 광전소자 분야의 특허출원・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.<개정 2019. 11. 1., 2023.

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

6. 28.>

- ⑨ 삭제<2019. 11. 1.>
- ⑩ 국제특허출원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개정 2015. 12. 30., 2025. 2. 28.>
- 1. 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관련 서류의 방식심사
- 2. 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와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
- ① 삭제 < 2025. 2. 28.>
- ① 삭제 < 2022. 12. 23.>

제12조의2(디지털융합심사국) ① 디지털융합심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,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. <개정 2023. 4. 11.>

- ② 디지털융합심사국에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, 사물인터넷심사과, 바이오기반심사과, 지능형로봇심사과, 자율주행심사팀, 스마트제조심사팀, 바이오진단분석심사팀, 바이오의약심사팀, 헬스케어기기심사팀 및 헬스케어데이터심사팀을 두되, 각 과장은 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, 각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공업사무관·농업사무관·임업사무관·수의사무관·해양수산사무관·기상사무관·보건사무관·의료기술사무관·의무사무관·학경사무관·항공사무관·시설사무관·전산사무관·방송통신사무관·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.<개정 2023. 4. 11., 2023. 8. 30., 2025. 2. 28.>
- ③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장은 머신러닝, 딥러닝, 영상인식, 시각지능, 음성인식 및 빅데이터서비스 분야의 특허출원·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.<개정 2025. 2. 28.>
- ④ 사물인터넷심사과장은 사물인터넷 서비스, 사물인터넷 단말 및 사물인터넷 매니징 분야의 특허출원·실용신안 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.
- ⑤ 바이오기반심사과장은 바이오시스템, 바이오응용, 바이오소재, 합성생물 및 유전체 분야의 특허출원·실용신안 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.<개정 2025. 2. 28.>
- ⑥ 지능형로봇심사과장은 로봇팔, 로봇매니퓰레이터, 로봇제어, 로봇인터페이스, 로봇모니터링 및 로봇시뮬레이션 분야의 특허출원·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.<개정 2025. 2. 28.>
- ⑦ 자율주행심사팀장은 조향제어, 속도제어 및 교통제어 분야의 특허출원·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.
- ⑧ 스마트제조심사팀장은 디지털 트윈(Digital Twin), 3D 프린팅, 금속가공, 플라스틱가공 및 스마트제어기기 분야의 특허출원・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.<개정 2022. 3. 4., 2025. 2. 28.>
- ⑨ 바이오진단분석심사팀장은 분자진단, 생물분석, 생물대사 및 단백질공정 분야의 특허출원·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.<신설 2025. 2. 28.>
- ⑩ 바이오의약심사팀장은 항체의약, 차세대의약, 펩티드의약 및 바이오약물전달 분야의 특허출원·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.<신설 2025, 2, 28.>
- ① 헬스케어기기심사팀장은 헬스케어식별기기, 헬스케어측정기기, 헬스케어분석기기 및 헬스케어진단기기 분야의특허출원·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.<신설 2025. 2. 28.>② 헬스케어데이터심사팀장은 생물데이터, 의료데이터, 의료서비스 및 디지털케어 분야의 특허출원·실용신안등록
- 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.<신설 2025. 2. 28.>

[본조신설 2019. 11. 1.]

[제목개정 2023. 4. 11.]

제13조(전기통신심사국) ① 전기통신심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,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. <개정 2023. 4. 11.>

② 전기통신심사국에 전기심사과, 컴퓨터심사과, 통신심사과, 전자상거래심사과, 방송미디어심사팀을 두되, 각 과장은 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,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공업사무관·농업사무관

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

- ・임업사무관・수의사무관・해양수산사무관・기상사무관・보건사무관・의료기술사무관・의무사무관・약무사무관・환경사무관・항공사무관・시설사무관・전산사무관・방송통신사무관・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.<개정 2020. 3. 31., 2023. 4. 11., 2023. 8. 30.>
- ③ 전기심사과장은 전력변환, 전동기, 전기차전장, 전력전송 및 발전기 분야의 특허출원·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.<개정 2023. 4. 11., 2025. 2. 28.>
- ④ 컴퓨터심사과장은 컴퓨터 제어, 컴퓨터 보안, 컴퓨터 메모리회로, 컴퓨터 입출력 및 컴퓨터 응용 분야의 특허출원·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.<개정 2023. 6. 28., 2025. 2. 28.>
- ⑤ 통신심사과장은 통신단말, 보안프로토콜, 전송시스템, 이동통신 안테나 및 통신프로토콜 분야의 특허출원·실용 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.<개정 2023. 4. 11.>
- ⑥ 전자상거래심사과장은 금융결제, 소셜네트워크 서비스, 전자거래, 디지털 콘텐츠 및 마케팅서비스 분야의 특허출원·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.<개정 2023. 4. 11.>
- ⑦ 방송미디어심사팀장은 멀티미디어, 방송시스템, 영상압축, 영상처리 및 오디오처리 분야의 특허출원·실용신안 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.<개정 2023. 4. 11.>

[전문개정 2019. 11. 1.]

[제목개정 2023. 4. 11.]

- 제14조(화학생명심사국) ① 화학생명심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,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. <개정 2023. 4. 11.>
 - ② 화학생명심사국에 유기화학심사과, 약품화학심사과, 기초재료화학심사과, 이차전지소재심사과, 고분자섬유심사과, 의료기술심사과, 환경기술심사팀, 이차전지설계심사팀 및 이차전지제어관리심사팀을 두되, 각 과장은 부이사관 ·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, 각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공업사무관·농업사무관·임업사무관·수의사무관·해양수산사무관·기상사무관·보건사무관·의료기술사무관·의무사무관·약무사무관·환경 사무관·항공사무관·시설사무관·전산사무관·방송통신사무관·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.<개정 2020. 3. 31, 2023. 4. 11, 2023. 8. 30, 2024. 6. 13.>
 - ③ 유기화학심사과장은 유기소재, 의약소재, 화장품소재 및 화학소재 분야의 특허출원 ·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.<개정 2023. 6. 28., 2025. 2. 28.>
 - ④ 약품화학심사과장은 제제의약, 천연물의약 및 합성의약 분야의 특허출원·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, 「특허법」제89조에 따른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.<개정 2023. 6. 28., 2025. 2. 28.>
 - ⑤ 기초재료화학심사과장은 착물화학, 코팅소재, 접착소재, 유기광원소재 및 탄소나노소재 분야의 특허출원・실용 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.<개정 2023. 6. 28.>
 - ⑥ 이차전지소재심사과장은 양극소재, 음극소재, 전극신소재, 전해질소재, 분리막소재 및 기능성소재 분야의 특허출원 ·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.<개정 2024, 6, 13.>
 - ⑦ 고분자섬유심사과장은 기능성고분자, 올레핀계고분자, 고분자조성물, 고분자가공 및 스마트섬유 분야의 특허출원·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.<개정 2023. 6. 28.>
 - ⑧ 의료기술심사과장은 의료용품, 치료기기, 보건위생, 진단기기 및 의료시스템 분야의 특허출원·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.<개정 2020. 3. 31.>
 - ⑨ 환경기술심사팀장은 수질정화, 오염물분리, 재생자원 및 폐기물처리 분야의 특허출원·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.
 - ⑩ 이차전지설계심사팀장은 셀구조설계, 전극구조설계, 전극제법, 셀주변장치 및 패키징의 특허출원·실용신안등록 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.<신설 2024. 6. 13.>
 - ① 이차전지제어관리심사팀장은 셀제어, 회로시스템, 충방전제어, 배터리순환관리 및 차세대전지 분야의 특허출원 ·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.<신설 2024. 6. 13.>

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

[전문개정 2019. 11. 1.] [제목개정 2023. 4. 11.]

제15조(기계금속심사국) ① 기계금속심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,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. <개정 2023. 4. 11.>

- ② 기계금속심사국에 일반기계심사과, 제어기계심사과, 건설기술심사과, 자동차심사과, 동력기술심사과, 운송기계심사과, 계측기술심사팀, 재료금속심사팀을 두되, 각 과장은 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, 각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공업사무관·농업사무관·임업사무관·수의사무관·해양수산사무관·기상사무관·보건사무관·의료기술사무관·의무사무관·약무사무관·환경사무관·항공사무관·시설사무관·전산사무관·방송통신사무관·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.<개정 2023. 4. 11., 2023. 8. 30.>
- ③ 일반기계심사과장은 제동기계, 기계요소, 이송보관부품 및 광학부품 분야의 특허출원·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.<개정 2023. 4. 11.>
- ④ 제어기계심사과장은 공작기계, 기계제어, 제어가공 및 이송제어 분야의 특허출원·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.
- ⑤ 건설기술심사과장은 국토기반, 수자원환경, 토목구조, 지오시스템 및 공기조화기기 분야의 특허출원·실용신안 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.<개정 2023. 6. 28.>
- ⑥ 자동차심사과장은 차량섀시, 파워트레인, 차량공조 및 조명장치 분야의 특허출원·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.
- ⑦ 동력기술심사과장은 동력변환, 동력전달, 동력제어 및 동력추진 분야의 특허출원·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.<개정 2023. 6. 28.>
- ⑧ 운송기계심사과장은 조선해양시스템, 육상운송, 항공우주시스템 및 정밀시험 분야의 특허출원·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.<개정 2023. 4. 11., 2024. 6. 13.>
- ⑨ 계측기술심사팀장은 화학바이오분석, 계측기계, 물성분석 및 측정시스템 분야의 특허출원·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.<개정 2023. 6. 28.>
- ⑩ 재료금속심사팀장은 표면처리, 금속도금, 금속소재 및 금속가공 분야의 특허출원·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.<개정 2023. 6. 28.>

[전문개정 2019. 11. 1.] [제목개정 2023. 4. 11.]

- **제15조의2(반도체심사추진단)** ① 반도체심사추진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,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.
 - ② 반도체심사추진단에 반도체제조공정심사과, 반도체설계심사과, 디스플레이심사과, 반도체소재심사팀, 반도체조립공정심사팀 및 반도체제조장비심사팀을 두되, 각 과장은 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, 각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공업사무관·농업사무관·임업사무관·수의사무관·해양수산사무관·기상사무관·보건사무관·의료기술사무관·의무사무관·약무사무관·환경사무관·항공사무관·시설사무관·전산사무관·방송통신사무관·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.<개정 2023. 8. 30., 2024. 12. 30.>
 - ③ 반도체제조공정심사과장은 노광공정, 에칭공정, 증착공정, 소자공정 및 플라즈마공정 분야의 특허출원·실용신 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.<개정 2024. 6. 13.>
 - ④ 반도체설계심사과장은 반도체소자, 반도체회로, 메모리회로, 반도체 응용설계 및 메모리소자 분야의 특허출원·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.<개정 2024. 6. 13.>
 - ⑤ 디스플레이심사과장은 유기발광다이오드(OLED), 화상소자, 화상구동, 화상광학 및 화상응용 분야의 특허출원·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.
 - ⑥ 반도체소재심사팀장은 반도체공정소재, 광화학소재, 전자부품소재 및 광반도체 분야의 특허출원·실용신안등록 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.

법제처 14 국가법령정보센터

- ⑦ 반도체조립공정심사팀장은 인쇄회로기판, 패키지공정, 반도체계측, 반도체시험 및 패키지구조 분야의 특허출원 ·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.<개정 2024. 6. 13.>
- ⑧ 반도체제조장비심사팀장은 기판처리장치, 기판이송장치, 유기박막제조공정, 유기소자적층공정 및 기판성막장치 분야의 특허출원・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.<개정 2024. 6. 13.>

[본조신설 2023. 4. 11.]

[제24조에서 이동, 종전 제15조의2는 제15조의3으로 이동 <2024. 12. 30.>]

제15조의3(소관사무의 일시조정) 기획조정관·국장 및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관 담당관, 과장 및 팀장이 분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. <개정 2024. 12. 30.>

[본조신설 2019. 11. 1.]

[제15조의2에서 이동 <2024. 12. 30.>]

제3장 특허심판원

- **제16조(특허심판원)** ① 특허심판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,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 급으로 한다.
 - ② 특허심판원에 두는 심판장 50명 중 10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, 그 직위의 직무등 급은 나등급으로 하고, 40명은 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.<개정 2020. 7. 14., 2023. 4. 11., 2023. 8. 30.>
 - ③ 특허심판원에 두는 심판관 56명은 과학기술서기관・서기관・공업사무관・농업사무관・임업사무관・수의사무관・해양수산사무관・기상사무관・보건사무관・의료기술사무관・의무사무관・약무사무관・환경사무관・항공사무관・시설사무관・전산사무관・방송통신사무관・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.<개정 2014. 11. 11., 2015. 11. 30., 2018. 3. 30., 2019. 11. 1., 2020. 7. 14., 2023. 8. 30.>
 - ④ 특허심판원에 심판정책과 및 송무과를 두되, 심판정책과장은 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, 송무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공업사무관·농업사무관·임업사무관·수의사무관·해양수산사무관·기상사무관·보건사무관·의료기술사무관·의무사무관·약무사무관·환경사무관·항공사무관·시설사무관·전산사무관·방송통신사무관·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.<개정 2019. 11. 1., 2023. 8. 30.>
 - 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심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신설 2020. 7. 14.>
 - 1. 소관 분야의 사건에 대한 심판처리 계획 수립 및 사건의 조정 배분
 - 2. 소관 분야의 사건 중 신속한 심리가 필요한 사건의 심판 및 사무총괄
 - 3. 소관 분야의 사건 중 5인 합의가 필요한 사건의 심판 및 사무 총괄
 - 4. 소관 분야의 심판・소송에 관한 조사・연구 총괄
 - ⑥ 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는 심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개정 2020. 7. 14., 2023. 8. 30.>
 - 1. 소관 분야의 심판
 - 2. 소관 분야의 심판에 관한 사무 총괄(특허심판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)
 - 3. 소관 분야의 심판 소송에 관한 조사 연구
 - ⑦ 심판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개정 2020. 7. 14.>
 - 1. 소관 분야의 심판
 - 2. 소관 분야의 심판 소송에 관한 조사 연구
 - ⑧ 심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개정 2019. 11. 1., 2020. 7. 14., 2021. 3. 30.>
 - 1. 심판처리 종합계획의 수립

법제처 15 국가법령정보센터

- 2. 심판제도 및 법령의 운영ㆍ개선
- 3. 특허심판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 복무 및 교육훈련
- 4. 심판관 평가에 관한 사무
- 5. 예산 · 결산 · 회계 · 용도 및 물품관리
- 6. 산업재산권 심판제도 관련 각종 자료의 발간 및 배포
- 7. 심결문집 판결문집의 발간 및 배포
- 8. 심판청구서의 접수
- 9. 심판서류의 방식심사 및 보정서의 처리
- 10. 심판관의 지정 변경 및 지정통지서 변경통지서의 송부
- 11. 구술심리・증인신문의 참여 및 조서의 작성
- 12. 기일지정 기일변경 및 지정기간 연장승인의 통보
- 13. 심결확정의 통보
- 13의2. 국선대리인 제도의 운영
- 14. 심판 관련 통계작성 및 관리
- 15. 원내 문서의 분류・접수・발송・편찬・보존 및 관리
- 16. 보안 및 관인·관인대장의 관리
- 17. 그 밖에 산업재산권 심판행정에 관한 사항
- ⑨ 송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개정 2019. 11. 1., 2020. 7. 14.>
- 1. 송무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
- 2. 특허소송제도 및 법령의 운영ㆍ개선
- 3. 송무 관련 각종 자료의 발간 및 보급
- 4. 특허소송 관련 통계작성 및 관리
- 5. 소송수행자 지정・변경
- 6. 준비서면, 답변서 제출 등 소송수행
- 7. 소송사무에 관한 처리 보고 및 통보
- 8. 그 밖에 산업재산권 소송 및 송무행정에 관한 사항

제4장 국제지식재산연수원

- **제17조(국제지식재산연수원)** ①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,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.
 - ②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 교육기획과, 지식재산교육과 및 국제교육과를 두되,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. 다만, 교육기획과장은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・운영하는 부이사관・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.<개정 2017. 12. 29., 2018. 3. 30., 2023. 8. 30.>
 - ③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개정 2019. 11. 1., 2021. 3. 30., 2022. 12. 23.>
 - 1. 지식재산에 관한 교육의 기본계획 수립
 - 2. 지식재산 교육에 관한 연감, 표준교재 등 관련 책자의 발간ㆍ배포 및 통계 관리
 - 3. 지식재산에 관한 교육콘텐츠 및 교육기법의 연구 개발
 - 4. 지식재산 관련 이러닝(e-learning) 계획 수립 및 운영
 - 5. 교수요원의 원내・외 강의 및 교재에 대한 검토・심의
 - 6. 교육운영에 대한 평가
 - 7. 행정혁신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

- 7의2. 국가발명인재관의 운영 및 관리
- 8. 보안 및 관인 관인대장의 관리
- 9. 원내 문서의 분류·접수·발송·통제·보존 및 관리
- 10. 원내 공무원의 인사 · 복무 및 교육훈련
- 11. 원내 예산·결산·회계·용도·재산 및 물품관리
- 12. 도서관리
- 13. 청사의 관리 및 방호
- 14. 그 밖에 원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
- ④ 지식재산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- 1. 특허청 소속 공무원 및 임용예정자에 대한 교육과정의 계획 수립 및 운영
- 2.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식재산 관련 교육과정의 계획 수립 및 운영
- 3. 기업 연구소 임직원 및 개인발명가 등 일반인에 대한 지식재산 관련 교육과정의 계획 수립 및 운영
- 4. 변리사 및 특허법률사무소 임직원 등 지식재산 전문인력에 대한 지식재산 관련 교육과정의 계획 수립 및 운영
- 5. 학생 및 교원에 대한 발명교육과정의 계획 수립 및 운영
- 6. 삭제 < 2019. 11. 1.>
- ⑤ 국제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개정 2019. 11. 1,, 2021. 7. 27,, 2022. 12. 23.>
- 1. 외국인 지식재산권 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
- 2. 외국인 지식재산권 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과정의 운영
- 3. 외국인 지식재산권 업무종사자에 대한 이러닝(e-learning)과정의 운영 및 교육콘텐츠의 연구·개발·확산 3의2. 특허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외국어 교육에 관한 사항
- 4. 특허청 심사관의 해외훈련 계획 수립 및 시행
- 4의2. 국제 지식재산 인력양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
- 5. 그 밖에 국제 지식재산 교육에 관한 사항

제5장 특허청서울사무소

제18조(특허청서울사무소) ① 특허청서울사무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. <개정 2023. 8. 30.>

- ② 특허청서울사무소에 총괄지원과 및 출원등록과를 두되, 각 과장은 공업사무관·농업사무관·임업사무관·수의 사무관·해양수산사무관·기상사무관·보건사무관·의료기술사무관·의무사무관·약무사무관·환경사무관·항 공사무관·시설사무관·전산사무관·방송통신사무관·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. 다만, 각 과장은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·운영하는 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공업사무관·농업사무관·임업사무관·하양수산사무관·기상사무관·보건사무관·의료기술사무관·의무사무관·향경사무관·항경사무관·청성사무관·항정사무관·청성사무관·행정사무관·한경사무관·행정사무관·보건사무관·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.<개정 2019. 11. 1., 2023. 4. 11., 2023. 8. 30.>
- ③ 총괄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개정 2023. 4. 11.>
- 1. 보안 및 관인 관리
- 2. 문서의 접수·발송·통제 및 직원의 복무·교육훈련
- 3. 예산의 집행·결산 및 물품관리
- 4. 전산시스템의 운영 및 서면으로 제출되는 서류의 전자문서화
- 5. 전산실의 운영 및 관리
- 6. 산업재산권 자료의 열람 복사
- 7. 산업재산권의 출원·등록·심판에 관한 각종 증명서와 등·초본의 발급
- 8. 특허증・등록증 발급 및 각종 등록원부의 열람

법제처 17 국가법령정보센터

- 9. 그 밖에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
- ④ 출원등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개정 2016. 10. 4.>
- 1. 산업재산권의 출원에 관한 서류의 접수 및 방식심사
- 2. 「특허협력조약」및 「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」에 따른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의 접수
- 3. 산업재산권의 등록 변동에 관한 서류의 접수 및 방식심사
- 4. 접수증 및 출원번호 통지서의 발급
- 5. 산업재산권에 관한 고객상담실의 운영
- 6. 접수된 출원・등록서류의 본청 이송
- 7. 우선심사신청서의 접수
- 8. 출원인 등록, 특허고객번호정보변경, 전자문서이용등록, 포괄위임등록서류의 접수 및 방식심사
- 9. 이의신청 및 심판에 관한 서류의 접수
- ⑤ 삭제 < 2023. 4. 11.>

제6장 공무원의 정원

- 제19조(특허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 특허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(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제25조 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은 별표 1과 같다. 다만, 「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」제 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. <개정 2018. 3. 30., 2020. 12. 29., 2021. 7. 27., 2023. 8. 30., 2024. 2. 27.>
 - ② 특허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전자적 증거의 수집 및 분석 업무를 담당하는 2명(6급 2명) 및 그 밖의 정원 중 3명(3급 또는 4급 3명)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.<신설 2021. 7. 27., 2023. 8. 30., 2024. 2. 27.>
- **제20조(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** ① 특허심판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. <개정 2018. 3. 30., 2020. 12. 29., 2022. 12. 23.>
 - ② 특허심판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3명(3급 또는 4급 3명)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.<신설 2023. 8. 30.>
 - ③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.<개정 2017. 12. 29., 2018. 3. 30., 2020. 12. 29., 2023. 8. 30.>
 - ④ 특허청서울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 같다.<개정 2017. 12. 29., 2018. 3. 30., 2020. 12. 29., 2023. 8. 30., 2024. 12. 30.>

제21조 삭제 <2016. 5. 17.>

제21조의2(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)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제24조제3항 및 「공무원임용 령」제3조의3제1항에 따라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 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20. 12. 29.]

제22조 삭제 <2023. 8. 30.>

제7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<신설 2018. 3. 30.>

제23조(평가대상 정원) 특허청에 두는 평가대상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9와 같다. <개정 2019. 11. 1., 2024. 6. 13.>

[본조신설 2018. 3. 30.]

법제처 18 국가법령정보센터

[제목개정 2024. 6. 13.]

제8장 한시정원 <개정 2024. 12. 30.>

제24조

[종전 제24조는 제15조의2로 이동 <2024. 12. 30.>]

제25조(한시정원) 상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하여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2월 28일까지 별표 10에 따른 한시정원을 특허청에 둔다.

[본조신설 2024. 2. 27.]

법제처 19 국가법령정보센터